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6
----------	-----

발의년월일 : 1993. 3.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안이유

- 도시계획법 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
- '91. 7. 19 충청북도직제규칙개정(제1779호)으로 조례개정

□ 주요골자

-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중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두고 위원은 20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2인 이내로”개정
- “부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를 추가 개정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조항 신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조항 신설
- 위원회 기능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되지 않은 업무”로 개정
- 시장 군수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도록 명기 개정
-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명기하도록 개정
- 도지사에게 보고를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으로 명기하도록 개정

□ 근거법령 :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의 2내지 제65조

□ 첨부

1.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두고 위원은 20인이내로”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2인 이내”로 한다.

제2조제3항중 “부지사”를 “도지사”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를 추가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들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도시계획상임기획단) 위원회는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와 도지사가 위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들 수 있다.

제4조제2항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위임되지 않은 업무”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삭제하고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를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당해시장 군수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제8조중 “도지사에게”를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신설)		제2조의2(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p>①위원회는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소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소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제2조의3 (신설)		제2조의3(도시계획상임기획단)		<p>위원회는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와 도지사가 위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p>

